

더큰경남,더큰미래 

2022년 「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」 시행지침

2022. 2



경 상 남 도
(일자리정책과)

「신중년 내일이음 50+ 사업」 시행지침

1 사업취지 및 목적

□ 추진근거

-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(취업지원 사업)
-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0조(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등)
- 도정 4개년 계획 공약사업 「일자리더하기 장려금」

□ 사업취지 및 목적

-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퇴직으로 신중년 취업희망자를 위한 일자리 시책이 요구됨
※'19년 경남지역 사업체 신중년 근로자 362천명, '19년~24년 기간중 151천명 퇴직예정
- 신중년 구직자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만50세 ~ 64세 신중년 신규 채용 시 최대 5개월간 일자리더하기 장려금(월 50만원)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신중년 퇴직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2 사업개요 및 단계별 기관 책무

□ 사업개요

- (사업기간) 2022. 2. 1. ~ 12. 31.(공고기간 포함)
- (지원예산 및 범위) 예산규모 125백만원(월 50만원×최대 5개월 지원×100명)
- (지원대상) 도내 중소기업 사업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남도에 둔 만50 ~ 64세 신중년 구직자를 '22. 2. 1. 이후 신규 채용한 자

※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'22 2. 1일이며,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년도 말 기준

- (지원방식) '22. 2. 1. 이후 신규 채용한 자를 대상으로 1개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지원금은 신청일 15일 이내에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한다.
- (지원인원) 사업신청 전년도 말일(21.12.31) 기준으로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최대 2명까지 고용장려금 지급

구분	피보험자	고용장려금 지급대상	비고
기업 종사자 수	5인~50인 미만	1명	
	50인 이상	2명	

<용어정의>

- ① '수행기관' 이라 함은 「신중년 내일이음 50+ 사업」 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**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** 말함
- ② '우선 사업자' 라 함은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중소기업 운영자는 본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함
- ③ '후순위 사업자' 라 함은 본 사업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후순위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향후 우선 사업자 탈락 및 집행잔액 발생 예상시 대체 또는 추가 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
- ④ '일자리더하기 장려금' 이라 함은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(이하, 고용장려금)을 말함

□ 단계별 기관 책무

단 계	수 행 방 법	추진주체
계획 및 지침 수립	· 운영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	도
↓		
사업공고	· 사업 공고 실시 · 홈페이지,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	수행기관
↓		
모집, 심사 및 (후순위)사업자 선정	· 접수 : 이메일 접수 원칙 · 심사 :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· 사업자 : 도내 기업중 조건 충족	수행기관
↓		
선정통보	· 우선(후순위) 사업자 선정 통보	수행기관
↓		
채용통보, 고용장려금 신청	· 채용후 근로계약서류 등 제출 · 고용장려금 신청서 제출	사업자
↓		
고용장려금 지급	·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급(월 1회)	수행기관
↓		
사업장 지도 점검 부정수급 관리	· 사업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(사업기간내 1회 이상 현장지도)	수행기관
↓		
사업비 정산 및 평가분석	· 사업비 정산 및 실적(취업 등)평가 · 사업전반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보고서 작성	수행기관
	· 사업종료후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 평가	도, 수행기관

※ 도는 사업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행기관 사업추진을 지원

3 세부사업지침

□ 사업자 신청자격

○ 필수사항 (모든 요건에 충족해야 함)

- ① 직전 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② 만5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③ 최저 임금(월1,914,400원) 이상 급여 지급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⑥ 중소·중견기업

○ 우대사항

- ① 특허, 벤처 인증 및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
- ② 고용위기산업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선, 자동차, 에너지_원전산업 해당 기업)
※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별지 참조
- ③ 청년창업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여성기업
- ④ 고용위기지역(창원시 진해구, 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)
- ⑤ 신중년 친화기업(사내 신중년 고용률 30% 이상)

□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

○ 사업자는 사업신청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○ 사업신청시 구비서류

※ 채용 완료 업체 사업 신청 시, 근로계약서류(p5) 같이 제출

제출서류	제출 서식	비고
① 사업참여신청서	「서식1」	
② 사업계획서	「서식2」	
③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	「서식3」	대표자, 참여근로자 확인
④ 사업자등록증		
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신청일 기준 1부	
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부 제출	직전년도 말 기준(21.12.31)	21.12.31 기준 근로자 수 5인 이상 확인
⑦ 4대보험 완납증명서		

※ 기타 심사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 사업자만)

□ 사업자 결격사유

○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

②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로 근로자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

③ 소비·향락 업체 및 파견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

※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파견, 공급, 도급업체 명시된 경우 신청 불가

④ 4대 보험 미가입·체납 사업장

⑤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 기업

⑥ 공적 자금 투입 기관, 기금 출현 기관 제외

⑦ 일부 업종 제외

⑧ '20, '21년 해당 사업 참여업체의 경우,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, 감소 시 신청 불가

□ 신중년 근로자 신규채용 기준

○ 만50세 ~ 만64세 구직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도민으로, **공고일 이전 1년간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**

※ 근로자 나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58.01.01. 이후 ~ 1972.12.31.이전

□ 신중년 근로자 채용기한 및 **근로계약서류 제출**

○ 신규채용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, 사업자는 채용 후 7일 이내 근로계약서류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
제출서류	제출 기준	비고
① 근로계약서 1부.	정규직, 계약기간 정함 없음을 명시	※ 근로기간 정함 없음
② 주민등록등본 1부.	2022.2.1 기준 경남 거주자	※ 주민번호 전체 표시
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.		
④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.	2021.01~입사일 이전 기간 확인	신규채용 여부 확인

※ 1개월 이내 채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업 선정 취소

□ 신중년 근로자 결격사유

○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신중년 근로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②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- ③ 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

※ 타재정지원금 지급 사업 (예 : 일자리안정자금, 두루누리 사회보험,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, 시니어 인턴십,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등 해당 근로자 명의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함)

예) 한 업체에서 근로자 각각 다른 타재정지원금 신청은 가능

근로자 명	지원금 사업	비고
홍길동 (A)	일자리안정자금	중복 아님 ※ 각각의 근로자 지원금 신청은 가능
김경남 (B)	신중년내일이음50+사업	

예) "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" 신청 근로자 명의로 타재정지원금 사업 중복참여 불가

근로자 명	지원금 사업	비고
홍길동 (A)	일자리안정자금	중복 해당 ※ 1개만 선택 가능
홍길동 (A)	신중년내일이음50+사업	

- ④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 (단 만 55세 이상 근로자 2년 초과 계약시 인정)
- ⑤ 비상근 촉탁근로자
- ⑥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

□ 기업 선정방법

-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.
- 선정심사위원회 임원 및 구성
 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-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거쳐 변경(해촉)할 수 있다.

- ① 수행기관
- ② 경상남도 일자리정책과
- ③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
- ④ 창원상공회의소
- 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
- ⑥ 그 밖에 신중년 고용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위원회의 개최 : 수행기관 필요 시

- 기타 위원회 사무처리, 위원회 수당 등 세부운영 사항은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○ 우선 사업자 선정기준

- 심사결과 최종동점인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및 후순위 사업자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.

- ① 근로자 채용 완료한 기업(단, '22. 2. 1. 이후 채용)
- ② 사내 신중년 고용률이 높은 기업
- ③ 영세기업(상시근로자 수 기준)
- ④ 신청 접수순

○ 선정 사업자의 사업배제

- 제출서류 및 사실관계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
- 수행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사업진행에 현저한 차질을 야기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배제가 필요한 경우

○ 후순위 사업자의 선정

- 수행기관은 선정 사업자의 사업배제시 또는 연도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후순위에 따라 도와 협의 후 후순위 사업자를 사업자로

선정 할 수 있다.

□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및 방법

○ (고용장려금 지급대상)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이 지급대상이며,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 완료(단, '22. 2. 1. 이후) 한 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○ (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) 사업자는 **임금 지급 후 7일 이내** 「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(서식6)」를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수행기관은 신청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.

※ 고용장려금 지급은 예산 범위내에서 1인당 최대 5개월,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며, 1개월 단위 후불지급하므로 중도 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은 인정하지 않음.

□ 사업장 지도·점검 의무

○ 수행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 일정비율 사업장을 **현장점검**한다.

○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근로자 명부, 임금지급증빙서류, 근로자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·상실 여부 등 필요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□ 기타 사항

○ 수행기관 및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비치, 보관하여야 한다.

○ 사업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해석에 의하며, 사업 시행 중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도와

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4 부정수급 관리

□ 정의

- 참여자(사업자, 신중년 근로자)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

□ 부정수급 유형

- 사업자 결격사유, 신중년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
-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

□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

- 사업배제
 -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부정수급사항 확인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이후 신중년 내일이음50+ 사업 참여를 배제토록 함
 - 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
- 고용장려금 환수
 - 부정하게 지급 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함
 - 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), 제33조의2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)
- 문서 위·변조의 처리
 -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서류의 위·변조가 확인될 경우, 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고발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-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
 - 부정수급자 반환명령에 대한 시효는 5년으로 함
- 기타 사항
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
5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

- 신청 시기 : 해당 근로자 근무 개시일 1개월 이후, 임금 지급 후 7일 이내 (22. 02. 01. 기준 소급 적용)

※ 근무 개시 첫 달 1개월 미만 근무 시, 일할 지급한 임금은 신청 대상 아님

- 신청 서류

제출서류	제출 서식	비고
①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	「서식6」	
② 월별 임금대장		
③ 임금 지급증빙서류	임금확인증	
④ 통장 사본(기업 명의)		
⑤ 근로자 근무 사진		

고용장려금 지급 방법

-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 명의 통장으로 입금

고용장려금 환수 사유

-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,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
 -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경우
 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에 포함될 경우

- 해당 근로자가 타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지원 받는 경우
- 주40시간 미만에 해당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아닌 경우

서식1 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 참여 신청서

접수번호 접수일자

1. 사업장 현황

사업장명		대표자명	
사업자등록번호		기업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
주소			
고용위기업체종에 해당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(원전산업)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	※ 해당기업 별지 참조

※ 심사우대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- 특허, 벤처 인증 및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
- 경남도 고용위기 업종(조선, 자동차, 에너지_원전산업)(별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름)
- 청년창업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여성기업
- 고용위기지역(창원시 진해구, 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)
- 사내 신중년 고용률 높은 기업(전체 근로자 중 만50세 이상 근로자 30% 이상 기업)

2. 담당자 정보(필수 기입)

담당자명		이메일	
전화번호		핸드폰번호 (필수 기입)	
팩스번호			

3. 사업신청내용

신청 근로자 수	명	근무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정규직
월 급여		근무시간	주 시간
수행업무			

※ 사업자의 신청자격에 허위가 있거나 사업자 또는 신중년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,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반환 및 제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 (확인)
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1. 사업장 현황

사업장명 (설립년도)		사업장관리번호	
업종		주요 생산품/서비스	
건강보험 피보험자수 (2021.12.31 기준)	명	인사노무 부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근로시간 관리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식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출퇴근기록대장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타 재정사업 참여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(재정사업명 : _____)	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
2. 재직근로자 현황

① 재직근로자 현황 (사업 신청일 기준)	총 근로자수		명			
	정규직	명	만50세 이상 근로자수	명		
	비정규직	명	※1972.12.31이전 출생자			
②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(사업 신청일 기준)	구분	계	6개월 미만	6개월~ 1년 미만	1년~ 3년 미만	3년 이상
	인원 수(명)					

3. 근로자 고용시기 (신청근로자만 기재)

※ 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조건만 기입

근로자 명	주당 소정근로 시간	주당 근로 일수	근로 시간대	월 임금수준(원)	복리 후생	채용(예정) 일자	근로자 생년월일
	시간	일	~			월 일	년 월 일
	시간	일	~			월 일	년 월 일
직무 내용							

4. 사업 참여 경로

사업 참여 경로	
----------	--

「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」 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, 신중년 근로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귀하

서식3

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
「신중년 내일이음 50+ 사업」 심사표
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사업체 현황	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
	업종		주요 생산품/서비스	
	피보험자수 (직전년도 말 기준)	명, 신중년 채용률 (/ 명)		
	기업 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	심사우대 해당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참여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(명)		타 재정사업 참여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(재정사업명 :)
심사 항목	배점		점수	
사업체 현황	40 ※ 인사노무부서 여부, 근로시간 관리방법, 정규직비율, 근로자근속률 등 사업체 현황에 대한 심사			
고용 창출 계획	40 ※ 고용시기 및 임금 조건에 대한 심사			
지원 필요성	20 ※ 특허(5점), 벤처(5점) 인증 및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(5점),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(5점) 해당 여부 심사			
가점	20 ※ 우대요건* *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점수 가점 부여 - 경남도 고용위기 업종 : 5점 - 청년창업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여성기업 : 5점 - 고용위기지역 : 5점 - 사내 신중년 고용률 높은 기업(30% 이상) : 5점			
심사결과				

※ 수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보조 심사표를 작성 할 수 있다.

서식5
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 (불)승인 통지서

「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」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()차

※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1. 사업장 현황	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			
사업장명		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 주소				대표자	
담당자		성명		전화번호	
2. 신청 내용		※ 다음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() 안에 ○, ×로 표시 ①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포함 () ②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포함 () ③ 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중인 자 () ④ 주40시간 미만/상시 근로자가 아닌 경우 () ※ 위의 내용이 확인될 시 지급된 고용장려금 전액 환수에 동의합니다. ()			
지원금 해당 근로자			신청내용		
번호	성명	입사일자	임금 지급 월	신청인원	신청금액
1			예) 4월, 5월 (2개월 분)	명	원
2				명	원
지급 신청액(합계)			원		
계좌번호		은행		(예금주:)	

「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」 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.

2022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귀하

첨부서류	1. 월별임금대장 2. 임금지급증빙서류(은행 이체확인증) 3. 통장 사본(기업 명의) 4. 근로자 근무 사진
------	--

※ 지원금 입금 통장은 기업명의 계좌여야 함

서식7

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 [현장점검표]

별지

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(고용위기산업 분류 기준)

○ 자동차, 조선, 에너지(원전산업) 코드 내역

개정 분류체계(제10차 기준)

대분류		중분류		소분류		세분류		세세분류	
코드	항목명	코드	항목명	코드	항목명	코드	항목명	코드	항목명
C	제조업 (10~35)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1	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	3011	자동차용 엔진 제조업	30110	자동차용 엔진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3012	자동차 제조업	30121	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0122	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302	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20	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201	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0202	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0203	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303	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	3031	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	30310	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3032	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	30320	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3033	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제조업	30331	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0332	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3039	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	30391	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0392	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0393	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0399	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304	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	3040	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	30400	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1	선박 및 보트 건조업	3111	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	31111	강선 건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1112	합성수지선 건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1113	기타 선박 건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		31114	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
C	제조업 (10~35)					3112	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	31120	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
D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(35)	35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	351	전기업	3511	발전업	35111	원자력 발전업